

광주하남 · 우산 · 도산 ·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5. 9.)

1. 건설위치

- **광주하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75-6 광주하남 천년나무 아파트 (행복주택, 총 300호)
- **광주우산**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행복주택, 총 361호)
- **광주도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52번길 86 (행복주택, 총 50호)
- **영광단주**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1길 34 (행복주택, 총 300호)

공급일정이 같은 「광주하남 · 우산 · 도산 · 영광단주」 행복주택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함)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신청 관련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인터넷, 모바일 신청시 개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어려운 고객께서는 관련서류 준비하시어 현장접수 가능하오며 다만,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및 5. 신청서류 참고]

- 금회 공고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 5. 9.)**이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연령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순 위	입주자격완화 내용		
1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가구원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1인
			2인
			3인 이상
	맞벌이 신혼부부		2인 이상
			3인 이상
			일반조건
			120% 이하
			110% 이하
			10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일반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연령	6세 이하(태아포함)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태아포함)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자		입주자격 조 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 모바일	현장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25. 5.20.(화) 10:00 ~ 5.21.(수) 16:00	'25. 5.21.(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 ~13시 제외)	2025. 5.28.(수) 16:00 이후	* 등기우편제출 '2025. 6. 5.(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사 (2~3개월 소요)	2025. 9.24.(수) 16: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ARS(1661-7700)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LH광산권지사 3층 주택계약실 [광산구 무진대로 246-7, 3층]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광주하남 행복주택

[단지전체현황]

공급 구분 (㎡)	최초 공급대상	건설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16	대학생 계층	112	16.35	9.6253	2.1781	8.1894	36.3428	10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개별난방	'19.01월
	청년 계층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12	26.03	15.3240	3.4678	13.0380	57.8598	20		
	고령자 (주거약자용)	18								

[금회모집대상]

공영 주택 면적 (㎡)	최 초 공급대상	금회 최 초 공급대상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16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		25	60	13,226	661	12,565	66,130	(+) 1,000	14,226	60,290	
	청년 계층	청년 계층	無소득			13,226	661	12,565	66,130	(-) 10,000	3,226	95,290	
						有소득	13,226	661	12,565	66,130	(+) 1,000	14,226	60,290
							13,226	661	12,565	66,130	(-) 10,000	3,226	95,290
							14,004	700	13,304	70,020	(+) 1,000	15,004	64,180
							14,004	700	13,304	70,020	(-) 11,000	3,004	102,10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		1	30	22,610	1,131	21,479	113,050	(+) 9,000	31,610	60,550	
		대학생	22,610			1,131	21,479	113,050	(-) 18,000	4,610	165,550		
			청년 계층			20,230	1,012	19,218	101,150	(+) 7,000	27,230	60,310	
		20,230				1,012	19,218	101,150	(-) 16,000	4,230	147,810		
		有소득	20,230			1,012	19,218	101,150	(+) 7,000	27,230	60,310		
			20,230			1,012	19,218	101,150	(-) 16,000	4,230	147,810		
		고령자 (주거약자용)	고령자 (주거약자용)			21,420	1,071	20,349	107,100	(+) 8,000	29,420	60,430	
						21,420	1,071	20,349	107,100	(-) 17,000	4,420	156,680	
	고령자 (주거약자용)			고령자 (주거약자용)	22,610	1,131	21,479	113,050	(+) 9,000	31,610	60,550		
					22,610	1,131	21,479	113,050	(-) 18,000	4,610	165,550		

[광주하남 행복주택]의 경우

- 금회 공고에 36형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16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통합 주첨하여 공급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비율을 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입주자격 완화 :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 26B형 고령자(주거약자용 외) 공급계층 : (최초) 고령자 → (조정) 고령자, 대학생, 청년 계층
* 순위 내 경쟁 시 "고령자 계층"에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을 "추가 공급대상계층"에 공급

- 16형, 26A형 주택에는 수납장, 책상, 소물장,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등이 설치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광주우산 행복주택

[단지전체현황]

공급 형별 (㎡)	최초 공급대상	건설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16A	대학생 계층 · 청년 계층	130	16.86	8.3318	2.1595	13.4862	40.8375	10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개별난방	'19.10월
16B			16.84	8.3219	2.1569	13.4702	40.7890			
16C			16.33	8.0699	2.0916	13.0623	39.5538			
26A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9	26.41	13.0512	3.3828	21.1252	63.9692	2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27	26.60	13.1450	3.4070	21.2772	64.4292	20		
36	신혼부부 계층	138	36.44	18.0077	4.6674	29.1482	88.2633	10(14)		

[금회모집대상]

공급 형태 (㎡)	최초 공급대상	회 공급대상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16A 16B 16C	대학생계층	대학생 계층		15	80	14,484	724	13,760	72,420	(+) 2,000	16,484	60,750				
	청년계층	청년 계층	無소득			14,484	724	13,760	72,420	(-) 11,000	3,484	104,500				
						有소득	15,336	767	14,569	76,680	(+) 2,000	16,484	60,750			
									15,336	767	14,569	76,680	(-) 11,000	3,484	104,500	
											15,336	767	14,569	76,680	(+) 2,000	17,336
							15,336	767			14,569	76,680	(-) 12,000	3,336	111,680	
26A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		3	12	24,396	1,220	23,176	121,980	(+) 10,000	34,396	63,640	
	대학생		24,396		1,220	23,176			121,980	(-) 20,000	4,396	180,310				
					21,828	1,091			20,767	109,140	(+) 8,000	29,828	62,470			
					21,828	1,091			20,767	109,140	(-) 17,000	4,828	158,720			
			청년 계층		無소득	21,828			1,091	20,767	109,140	(+) 8,000	29,828	62,470		
						21,828			1,091	20,767	109,140	(-) 17,000	4,828	158,720		
									23,112	1,156	21,956	115,560	(+) 9,000	32,112	63,060	
										23,112	1,156	21,956	115,560	(-) 19,000	4,112	170,97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고령자 (주거약자용)				3	20	24,586	1,229	23,357	122,930	(+) 10,000
						24,586			1,229			23,357	122,930	(-) 20,000	4,586	181,260
									35,440			1,772	33,668	177,200	(+) 18,000	53,440
									35,440			1,772	33,668	177,200	(-) 29,000	6,440
36				신혼부부 한부모		청년 계층	無소득	30,124	1,506			28,618	150,620	(+) 15,000	45,124	63,120
	30,124	1,506						28,618	150,620			(-) 24,000	6,124	220,620		
			31,896		1,594	30,302	159,480	(+) 16,000	47,896	66,140						
			31,896		1,594	30,302	159,480	(-) 26,000	5,896	235,310						
	고령자			33,668	1,683	31,985	168,340	(+) 17,000	50,668	69,170						
				33,668	1,683	31,985	168,340	(-) 27,000	6,668	247,090						

- **[광주우산 행복주택]의 경우**
- 16A, 16B, 16C형은 16형으로 통합하여 당첨자 선정됩니다.
- 금회 공고에 26A형(청년), 26A형(주거급여수급자)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 입주자격 완화 :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 26A형 공급계층 : (최초) 고령자(주거약자 외) → (조정) 고령자, 대학생, 청년 계층
 - * 순위 내 경쟁 시 "고령자 계층"에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을 "추가 공급대상계층"에 공급
 - 36형 공급계층 : (최초)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조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 고령자 계층
 - *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을 "추가 공급대상계층"에 공급

- 16형 "대학생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가스쿡탑, 냉장고, 냉장고장, 책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16A, 16B형의 경우 불박이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광주도산 행복주택**

[단지전체현황]

공급 형태 (㎡)	최초 공급대상	건설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4	26.77	16.9829	7.7102	-	51.4631	2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개별난방	'22년.8월
36	청년	4	36.65	23.2508	10.5558	-	70.4566	10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8						10 (14)		

[금회모집대상]

공영 주택 면적 (㎡)	최초 공급대상	회 공급대상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고령자 (주거약자용)		-	10	21,888	1,094	20,794	109,440	(+) 8,000 (-) 18,000	29,888 3,888	62,770 161,940			
36	청년 계층	청년 계층	無소득	-	10	26,826	1,341	25,485	134,130	(+) 12,000 (-) 22,000	38,826 4,826	64,130 198,290			
			有소득			28,404	1,420	26,984	142,020	(+) 14,000 (-) 23,000	42,404 5,404	60,350 209,100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10	31,560	1,578	29,982	157,800	(+) 16,000 (-) 25,000	47,560 6,560	64,460 230,710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10	31,560	1,578	29,982	157,800	(+) 16,000 (-) 25,000	47,560 6,560	64,460 230,710			

- **[광주도산 행복주택]의 경우**
- 금회 공고에 16형, 26A형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 영광단주 행복주택

[단지전체현황]

공급 형별 (㎡)	최초 공급대상	건설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22	청년	58	22.51	11.7791	3.6267	14.2022	52.1180	10	복도식 / 개별난방 / 벽식구조	'24년6월
26A	고령자	14	26.98	14.1182	4.3469	17.0224	62.4675	20		
	주거급여수급자	3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6	26.98	14.1182	4.3469	17.0224	62.4675	20		
36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6	36.91	19.3144	5.9469	23.2876	85.4589	10 (14)		

[금회모집대상]

공급 형별	공급대상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22	청년(無소득)	-	50	13,634	682	12,952	80,660	(+) 3,000	16,634	63,160
	청년(有소득)			14,436	722	13,714	85,410	(-) 10,000	3,634	109,820
26A	고령자	-	14	17,328	866	16,462	102,520	(+) 4,000	18,436	62,070
								(-) 11,000	3,436	117,490
	주거급여수급자	7	10	13,680	684	12,996	80,940	(+) 7,000	24,328	61,680
								(-) 13,000	4,328	140,43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2	16	17,328	866	16,462	102,520	(+) 3,000	16,680	63,440
								(-) 10,000	3,680	110,100
36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	10	24,960	1,248	23,712	147,680	(+) 7,000	24,328	61,680
								(-) 13,000	4,328	140,430
								(+) 15,000	39,960	60,180
								(-) 20,000	4,960	206,010

- [영광단주 행복주택]의 경우
- 금회 공고에 26형(청년), 36형(청년), 44형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22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가스쿡탑, 냉장고)이 설치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 유의사항(공통)

- 대기 중인 예비자 수는 공고일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 적용)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 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 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 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5. 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④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12,867,132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13,546,572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14,599,629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10,400만원 이하** 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대학생	1인	0인	120%	104,000,000원	-
	2인	0인	110%	104,000,000원	-
		1인	120%	114,000,000원	-
	3인 이상	0인	100%	104,000,000원	-
		1인	110%	114,000,000원	-
		2인 이상	120%	125,000,000원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317,797원 이하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② 일반공급 순위(광주하남·광주우산)

1순위	광주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전라남도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 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5. 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⑦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④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⑦ (청년)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5. 5.10.~2006. 5. 9.)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12,867,132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13,546,572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14,599,629원 이하	
세대원(본인)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 · 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0인	120%	254,000,000원	38,030,000원
	2인	0인	11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279,000,000원	41,83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279,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305,000,000원	45,630,000원
세대원(본인)	1인	0인	120%	254,000,000원	38,030,000원
	2인	0인	11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279,000,000원	41,83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279,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305,000,000원	45,630,000원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임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317,797원 이하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단, 청약신청 시 '소득없음'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임대조건을 결정하고 수정계약을 체결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
- ※ 차량등록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가액이 기준가액을 초과할 경우 단지내 차량등록이 불가하여 단지내 주차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은 개별지분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② 일반공급 순위(광주하남·광주우산·광주도산)

1순위	광주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전라남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일반공급 순위(영광단주)

1순위	영광군 또는 연접지역(함평군, 장성군, 고창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 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5. 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①-㉓와 ②~④를 모두 갖춘 자

- ①-㉓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중인 사람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①-㉓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㉓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120%(2순위), 150%(3순위))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12,867,132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13,546,572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14,599,629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7,120,104원 이하	130%	7,667,804원 이하	140%	8,215,505원 이하	150%
	3인	9,152,368원 이하	120%	9,915,065원 이하	130%	11,440,460원 이하	
	4인	10,293,706원 이하		11,151,514원 이하		12,867,132원 이하	
	5인	10,837,258원 이하		11,740,362원 이하		13,546,572원 이하	
	6인	11,679,703원 이하		12,653,012원 이하		14,599,629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
 맞벌이 **842,446원(2순위 912,650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371,000,000원	41,83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45,63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110%	337,000,000원	38,030,000원
		3인	0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41,830,000원
		4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45,630,000원

○	2인	0인	130%	337,000,000원	38,030,000원
	3인	0인	12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30%	371,000,000원	41,830,000원
	4인 이상	0인	12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3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40%	405,000,000원	45,63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7,120,104원 이하	7,667,8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9,915,065원 이하	10,677,762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11,151,514원 이하	12,009,323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11,740,362원 이하	12,643,467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12,653,012원 이하	13,626,320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차량등록**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가액이 기준가액을 초과할 경우 단지내 차량등록이 불가하여 단지내 주차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은 개별지분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② 일반공급 순위(광주우산·광주도산)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광주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전라남도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일반공급 순위(영광단주)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영광군 또는 연접지역 (함평군, 장성군, 고창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 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빠른자가 우선 선정되며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공급계층이 우선 선정됩니다.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5. 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출생일 1960. 5. 9.이전)**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12,867,132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13,546,572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14,599,629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 고령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고령자	1인	0인	120%	337,000,000원	38,030,000원
	2인	0인	11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371,000,000원	41,83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45,63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317,797원 이하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5. 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의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의 경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자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 모바일	현장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25. 5.20.(화) 10:00 ~ 5.21.(수) 16:00	'25. 5.21.(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 ~13시 제외)	2025. 5.28.(수) 16:00 이후	* <u>등기우편제출</u> <u>(일반우편 및</u> <u>현장제출 불가)</u> 2025. 6. 5.(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사 (2~3개월 소요)	2025. 9.24.(수) 16: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ARS(1661-7700)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LH광산권지사 3층 주택계약실 [광산구 무진대로 246-7, 3층]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현장접수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 3층 LH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주택계약실

[등기우편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3층 LH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담당자앞

- 청약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으로 접수하시길 권장 드리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신청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자격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여 적격자가 모집인원(예비입주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만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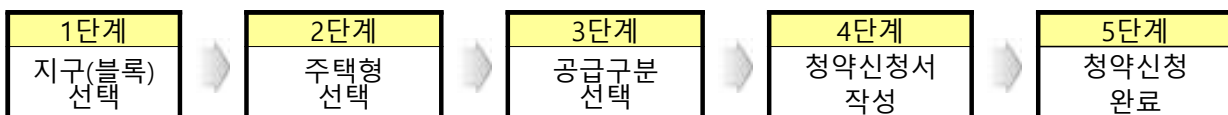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 5.20.(화) 10:00시부터 '25. 5.21.(수)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 5.20.(화) 10:00시부터 '25. 5.21.(수)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 방법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 「5.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신청장소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3층 주택계약실
신청일시	2025년 5월 21일(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1599-1)
약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5. 5.28.(수) 16: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청약』클릭 →『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청약』→『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25. 6. 5.]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62363)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상가 3층
LH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앞
-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 5. 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비 고 (※ 서류제출시, 반드시 A4 사이즈 종이 1장당 확인서 1장으로 출력하여 작성 제출)	발급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입주자격완화 확인서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첨부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함정보)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본인세대에 속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첨부 양식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첨부 양식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발급)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발급)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행정 복지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 서류 추가제출	행정 복지 센터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해당 병원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행정 복지센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 공급대상자(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각서(첨부양식)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 년 계 층	공통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은행 등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직장(세무서)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학교 병무청

신 혼 부 부 계 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첨부양식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 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직장(세무서)
	고령자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2025. 9.24.(수) 16: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당첨/낙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개별통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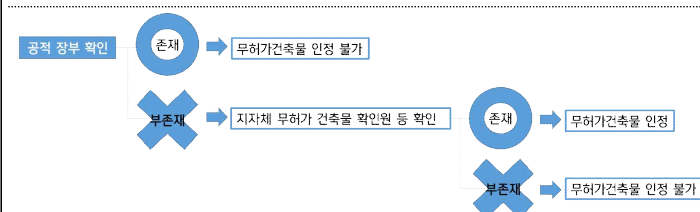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총 자산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 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 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 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 <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td>10년</td></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abl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 입주자격 완화에 따른 유의사항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등록 관련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4년의 경우 3,708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임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광주하남 행복주택	A-1BL	한국토지주택공사	영록건설(주) (주)창우종합건설 (주)동부토건 두양산전(주)	-	-
광주우산 행복주택	H-1BL		일진건설산업(주) 대한건설(주) (주)신명전력	-	-
광주도산 행복주택	1BL		대유건설(주) 주식회사 건영		
영광단주 행복주택	A1		남진건설(주) 남양건설(주) (주)예진종합건설	-	(주)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주)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주)신원기술단

10. 지구 및 단지 특성

■ 광주하남 행복주택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에는 교통광장, 고가도로, 35m도로 및 하남시영2단지 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호남선 철도, 광주광역시 소방학교, 광주 공무원 교육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18미터 도로와 미소래 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교통광장, 고가도로, 무진대로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구변 호남선 철도, 고가도로, 소방학교 및 교통광장 등으로 인해 소음 및 기타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각종 이미지컷 등의 이미지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 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 단지외 시설물 : 호남선 철도, 무진대로, 고가도로, 인접도로, 교통공원, 보도, 전주, 가로등 등
 - * 단지내 시설물 :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옥외계단실, 장비반입구,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저수조, 펌프실, 환풍, 제연환풍, 재활용품보관소, 도로, 주차장, 환기탑 및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차량출입 램프,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공청안테나 등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레벨, 층고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측세대, 저층세대 등)는 사다리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각종 면적은 배분과정 상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은 저층부에 필로티가 반영되어 있어 전후로 차량이 관통하는 구조입니다.
- 101동 옥탑에 공청안테나가 설치되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제연설비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211대(지상83대, 지하127대, 상가1대)이며, 단지배치 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으니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1m이고, 편도 1차로입니다.
- 아파트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 내에는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환풍, 제연환풍, 재활용품보관소, 옥외계단실, 환기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소음, 진동, 미관저해, 악취, 해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전·후·측면에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및 실외기,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시고 이사 및 구매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가 있습니다.
- 전면발코니 세대 간 벽체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로티 인접세대 제외)
- 전면발코니 세탁기 설치위치 후면에는 가스보일러가, 상부에는 발코니선반이 설치됩니다.
- 16타입 및 26타입 일부 지정된 대학생 및 청년 공급세대는 빌트인 가구(수납장, 책상, 소물장, 냉장고, 가스쿡탑 등)가 설치되며, 이외의 공급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구(주방, 소물장, 신발장, 수납장, 책상 등) 뒷면 및 하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세대 욕실은 습식욕실로, 이외의 세대는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주거약자세대(26B타입)는 일괄설치 시설로 인하여 욕실, 현관, 신발장 등의 마감이 일반세대와 다르게 설치되오니 공급세대 확인 시 주의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 주거약자세대 일괄 설치품목 : 안전손잡이(좌변기, 샤워부스, 현관), 바닥단차높이기(욕실), ABS 미닫이문(욕실), 비상콜(욕실), 야간센서등(욕실벽) 설치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 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일반사항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광주우산 행복주택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에는 왕복6차선 대로, 이마트, 광산중학교, 송우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우산동행정복지센터, 광산우체국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소공원, 리버힐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왕복14차선 대로, 우산지하도, 빚고울국민체육센터, 호남요양병원, 광주여자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소공원 등으로 인해 소음 및 기타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자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각종 이미지컷 등의 이미지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 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 단지외 시설물 : 무진대로, 지하차도, 인접도로, 소공원, 보도, 전주, 가로등 등
 - * 단지내 시설물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공용세탁실(코인세탁기 설치), 경로당, 대회의실, 상담실1,2,3, 청소년상담센터,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옥외계단실, 방재실,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저수조, 펌프실, 환룸, 제연환룸, 재활용품보관소, 도로, 주차장, 환기탑 및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차량출입 램프,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음식물보관소, 재활용보관소,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공청안테나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6m이고, 편도 1차로입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레벨, 층고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사다리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각종 면적은 배분과정 상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102동은 저층부가 부대시설과 상가시설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제연설비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273대(지상65대, 지하188대, 상가20대)이며, 단지배치 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으니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 내에는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환룸, 제연환룸, 재활용품보관소, 옥외계단실, 환기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소음, 진동, 미관저해, 악취, 해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측,동측면 1층에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인접세대 일부구간에 경량벽체가 설치되어 세대간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및 실외기,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시고 이사 및 구매하시기 바라며, 설치불가로 인한 사업주체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가 있습니다.
- 전면발코니 세탁기 설치위치 후면에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맞은편에는 발코니선반이 설치됩니다.
- 16타입 대학생 및 청년계층 공급세대는 빌트인 가구(책상, 냉장고장, 냉장고, 가스쿡탑 등)가 설치되며, 이외의 공급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구(주방, 냉장고장, 신발장, 수납장, 책상 등) 뒷면 및 하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세대 욕실은 습식욕실로, 이외의 세대는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주거약자세대(26B타입)는 일괄설치 시설로 인하여 욕실, 현관, 신발장 등의 마감이 일반세대와 다르게 설치되오니 공급세대 확인 시 주의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 주거약자세대 일괄 설치품목 : 안전손잡이(좌변기, 샤워부스, 현관), 바닥단차높이기(욕실), ABS 미닫이문(욕실), 비상콜(욕실), 야간센서등(욕실벽) 설치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 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일반사항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광주도산 행복주택

■ 단지 외부여건

- 광주광산구청에서 약 1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측에 광주공항, 서측에 광주평동일반 산업단지, 동측에 송정초등학교, 송광중학교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남측 정면 1개소, 단지보행 출입구는 남동측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녹지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출입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2차원, 3차원), 각종 이미지컷 등의 이미지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시설물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 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외 시설물) 인접도로, 보도, 전주, 가로등 등
 - (단지 내 시설물) 펌프실, 저수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MDF실, 방재실, 휴게소,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우편함 등
- 단지 내 시설물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레벨, 층고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면적은 배분과정 상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옥탑에 공청안테나, 위성수신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01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공용전기요금이 절감되거나, 절감금액 범위내에서 일부가 유지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에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상주차장으로 총29대 단지 내 배치예정으로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보관소 설치위치에 따라 일부세대에 소음 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조경석 쌓기 포함)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 부대시설 등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설치 시 외부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면적 및 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원격검침은 1종 (수도)입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시스템이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 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 에어컨 및 실외기,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시어 이사 및 구매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 평형의 경우 발코니 폭이 협소할 수 있으므로 세탁기 및 건조기 준비 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설치가능여부 확인)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 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 세대 간 벽체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뒷면 및 하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마감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주방가구, 조명기구, 승강기,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주방보조등)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26㎡A, B 및 36㎡타입에 설치되며 16㎡타입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영광단주 행복주택

- 본 단지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콘크리트벽체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내·외부의 벽체는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벽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자를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 지구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외의 신설 예정도로 및 주변 시설물은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주변에 영광병원, 학교, 스포디움(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 행복주택 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에는 인근주거지역 및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인근 아파트단지 및 스포디움(체육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농기구수리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영광병원 및 **영광병원 장례식장, 묘지**, 아파트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서측 정면 1개소로서 출입도로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 출입구는 남측 1개소로서 출입도로는 12M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10M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보도, 가로등, 전주, 출입구, 울타리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단지의 출입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2차원, 3차원), 각종 이미지컷 등의 이미지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 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 시설물) 인접도로, 보도, 전주, 가로등 등
 - (단지 내 시설물) 전기실·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경로당,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부속정원,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소 4개소, 우편함, 무인택배함, 음식물처리기 등
- 단지 내 시설물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레벨 층고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면적은 배분과정 상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 전용.공용면적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시공사 부도 등)로 인하여 공사 준공 및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통신인입 관련하여 통신맨홀이 비상차량출입구 부근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옥탑에 공청안테나, 위성수신안테나가 설치되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태양광발전설비는 각 동 지붕층에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는 관련 법률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 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입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제연설비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천장 공기유입은 에어컨(냉방장치)이 아닌 환기팬에 의한 것이며,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측벽에 CI(LH)등의 로고표시 및 영광군 색채가 반영될 수 있으며, 아파트 명칭은 고유의 우리말 또는 지명이 사용될 예정으로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에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주차장으로 지상 56대, 지하 160대, 총216대로 아파트 215대, 상가 1대이며 단지 내 배치예정 으로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 3층에 급속 충전기 1대와 완속 충전기 3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와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동 전.후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설치위치에 따라 일부세대에 소음 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동 1층 출입구 우편함과 같은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층 내에는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옥외계단실 환기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소음, 진동, 미관침해 악취 해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설치위치 : 어린이 놀이터 지하)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출차경광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안전운행과 차량소통을 위해 차량유도등이 설치되며, 주차 공간별 주차유도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조경석 쌓기 포함)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 등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설치 시 외부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면적 및 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원격검침은 2종 (전기, 수도)입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도시가스 압력조정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 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 에어컨 및 실외기,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시어 이사 및 구매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폭이 협소할 수 있으므로 세탁기 및 건조기 준비 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설치가가능여부 확인)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 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해 샘플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 세대 간 벽체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뒷면 및 하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마감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됩니다.
- 주방 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 후면에 정풍량 댐퍼가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이 적용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매입 다운라이트 등으로 설치되어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내 통합관리반은 현관입구 신발장 맞은편 벽면(44㎡)와 거실/침실 내 벽면(26㎡,36㎡), 현관입구 세탁실 옆 벽면(22㎡)에 매립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보일러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주방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팸플릿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가스휴즈콕크 구매 및 설치는 입주자 부담사항입니다.
- 실외기실 천장은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재 없이 노출 시공됩니다.
- 당해 지구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서 가스보일러가 설치됩니다. 가스보일러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바람 등의 사유로 창호 개방시 연기·냄새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수도계량기 전단에 감압변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수압이 다소 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실내 환기 작동시 환기유니트에 결로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세대(26B타입)은 일괄설치 시설로 인해 일반세대와 일부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일괄설치시설: 안전손잡이(욕실, 현관), 좌식샤워의자(욕실), 현관 경사로

■ 기타 일반사항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조명밝기 600 ~ 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주거약자 전체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룩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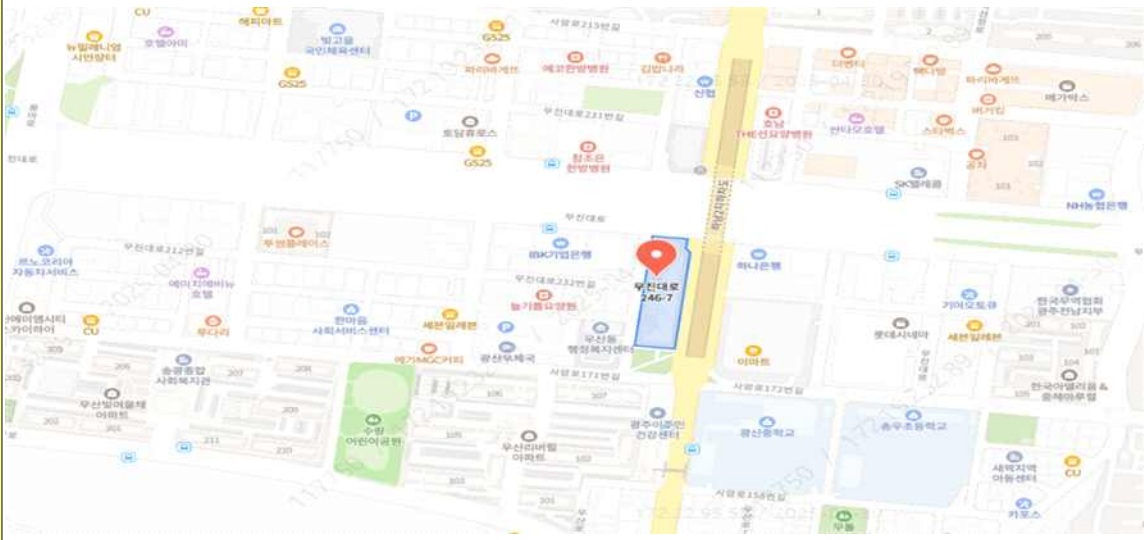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 해당단지지는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중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임대주택 상담문의 :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처 약도	
도로명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상가 3층 주택계약실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9.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신청단지		신청형별		접수번호	
		신청계층		연락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확인 내용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확약서

(입주자격완화 관련)

본인은 _____ 행복주택을 신청·계약함에 있어 본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한
공고에 따른 입주자로서 재계약 시 아래와 같은 특수조건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이
행할 것이며, 미 이행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재계약을 위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부금을 완납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완화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기본임대조건이 할증되며, 재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
월
년

성명 : (인)

생년월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계약자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할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000년 00월 00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에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 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원	[임차인]	
		아니오 ☐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원	[수분양자]	
		아니오 ☐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출자지분	예 ☐	원	[출자자]	
		아니오 ☐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원	[임대인]	
		아니오 ☐	원	[임대인]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예 ☐	원	[차주]	
		아니오 ☐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_____ 지구 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연락처 :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 신청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지구 행복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제공 동의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지구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지구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 년 위 의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_____지구 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세대 분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신청인 세대와 배우자 세대의 구성원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분
본인 (필수기재)		-	(예시) 본인,세대주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 배우자,세대원	동일세대 ☐ 분리세대 ☐
(예시)부		-		
		-		
		-		

20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 상기 본인은 20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각서인 : (인)

- 50 -

위 임 장 (해당자만)

□ 주택의 표시 : _____ 행복주택

위 표시 임대주택의 _____ 에 관하여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관련 업무의 일체를 위임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신청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수 임 자(대리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 붙 임 :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